#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1 발의연월일: 2020. 6. 16.

발 의 자:김철민·박 정·권칠승

서영교 • 백혜런 • 이정문

김민기 · 안민석 · 한병도

윤후덕 · 임종성 · 이용선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도입하였고,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였다고 인정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4월에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주택 건설과정에서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와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사전인정제품의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시공 이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함 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성능평가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성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 결과 성능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의 경우 그 사업주체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성능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지41조의2(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성능평가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성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결과 성능평가기준에 미달하는주택의 경우 그 사업주체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성능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현 행	개 정 안
<u> </u>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성능평가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성능평가기준에 따른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능평가기준에 따른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결과 성능평가기준에 미달하는주택의경우 그 사업주체에게기간을 정하여시정할 것을 명할수있다. ④ 성능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